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0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정춘생·황운하·박은정

김준형 · 김선민 · 이해민

강경숙 • 백선희 • 차규근

서왕진 · 신장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·활용 정책과 달리, 협상· 매입·기증 등을 통한 '환수'나 현지에서의 '보존 및 활용' 등이 정책 의 주요 방향임.

그런데 국외문화유산 환수 등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보존·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, 현재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함께 규정되어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 함으로써 불법·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·활용과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·공영에 기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, 보존·관리 실태,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마.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를, 국외문화유산의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 및 제14조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,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·선양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하며,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(안 제15

조, 제16조 및 제18조).

- 사.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·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함(안 제21조).
- 아.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,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 및 제24조).

법률 제 호

국외문화유산의 보존 • 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· 활용과 적극적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·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국외문화유산"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 기간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)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·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.
- 2. "보존"이란 국외문화유산을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하고, 가치의 훼 손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활용"이란 국외문화유산을 그 가치와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환수"란 국외문화유산을 협상・구입・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국

내로 영구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.

- 5. "출처"란 국외문화유산이 제작·발견·발굴 등으로 출현한 때부 터 현재까지의 소재 및 소유권의 변동 이력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이념) ①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는 원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 - ② 국외문화유산이 불법·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된 국제조약에 위반되어 국외로 반출된 것은 환수되어야 한다.
 - ③ 국외문화유산은 현 소재국 또는 소장기관 등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·선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 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 하고,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와 관 런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국외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
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 인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5년마다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(이 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· 평가
- 3. 국외문화유산의 조사, 정보화에 관한 사항
- 4. 국외문화유산의 국제협력,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
- 5. 국외문화유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
- 6. 제21조에 따른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리고,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관할구역과 관련된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

- 2.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
- 3.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
- 4.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고,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한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소관 사항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국회 보고)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.
- 제9조(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국외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대한 의견 청취) 국가유산 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장 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

- 제11조(국외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)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, 보존·관리 실태, 출처 등에 관하 여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, 한국국제교류재단,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한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및 조치) ① 국외문화유산을 보존· 활용 및 환수할 목적으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, 개인 소장자 등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기

관이나 단체는 사전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한 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원 현황이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출처 조사 결과 과거 불법적 수단으로 반출·반입된 경우에는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불법적 수단이 란 침략시 약탈, 강점시 강탈, 도굴·도난 등 정상적인 수단에 반하는 행위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.
- 제13조(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・활용 및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・관리하고,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(이하 "정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외문화유산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·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4조(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·운영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문화유산협력망(이하 "협력망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
 - 2.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환수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
 - 3. 멸실 또는 훼손 위기에 있는 국외문화유산의 보호대책 수립
 - 4.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이용
 - 5.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협력망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협력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

제15조(국외문화유산의 보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환경 개선 및 보존을 위한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수 있다.
- 제16조(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선양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·선양하는 데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환수 성과 등을 전시하고 홍보·교육하기 위하여 전시관이 나 홍보관,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 선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 및 재 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· 선양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국외문화유산의 교육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8조(국외문화유산의 환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환수 전략을 수립하고, 협상·구입·기증 등 다각적 방 법을 통하여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이 국 내에서 보존·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9조(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, 국제기구, 외국 소장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정의 세결 등을 통하여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공동사업 등을 실시할수 있다.
- 제20조(국외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) ① 국가유산청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 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·육 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

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장 국외문화유산재단

- 제21조(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①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·연구,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와 관련한 각종 전략·정책 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 재단을 설립한다.
 -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- ④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또는 「국가유산보호기금법」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- ⑤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행한다.
 - 1. 국외문화유산의 현황, 출처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
 - 2.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관한 연구
 - 3. 국외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·활용
 - 4. 협력망의 운영 지원
 - 5.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・활용 및 환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・교

류 및 국제연대 강화

- 6.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 관련 홍보·교육·출판 및 보급
- 7.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
- 8.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
- 9. 국외문화유산의 수리 및 홍보 지원
- 10.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 공로자에 대한 예우
- 11. 정보체계의 운용 지원
- 12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13.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.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14.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 외문화유산의 보존・활용 및 환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2조(금전 등의 기부) ①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.

-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 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 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, 관리·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국외문화유산재단이 아닌 자는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24조(공로자 예우)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 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시상(施賞)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로자의 기준과 시상 등 예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하거나 국외문화유산 의 보존·활용 및 환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2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7장 벌칙

제27조(과태료)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국외문화유산재 다으로 본다.

-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.

제8장(제67조부터 제69조의4까지)을 삭제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